제182회 거창군의회

【 임 시 회 】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조례 3건)

거 창 군 의 회

【총무위원회】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2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	2
2012 ~ 23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
2012 ~ 24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3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22

제출일자 : 2012. 4. 12.
발의의원 : 백범영 · 조선제

1. 제정이유

○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안 제3조)

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마.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안 제5조)

바. 계약담당부서 및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안 제6조)

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자. 군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우수사업체를 선별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차. 군수는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본 조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2. 4. 13. ~ 2012. 4. 17.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비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총공사비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 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제1호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등)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1. 운영부서 : 재무과
2. 신고대상 :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3. 운영시간 : 연중 365일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 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관련 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 할 수 있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임금 및 임대료 체불업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의 의무)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약정서(제4조 관련)

우리 업체에서는 (　　)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거창군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서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귀하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23

제출일자 : 2012. 4. 12.
발의의원 : 강철우·강창남·안철우·이애숙

1. 제정이유

○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지정절차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2만원으로 규정함(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다.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2. 4. 13. ~ 2012. 4. 17.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 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 폐지한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2~24

제출일자 : 2012. 4. 12.
발의의원 : 이성복·안철우·이애숙

1. 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안 제2조)

나. 5년 단위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다.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안 제4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단체) 행사 지원

○ 학술행사, 독서교육, 연령·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백일장,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행사 개최 및 지원

라. 독서의 달 운영(안 제5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연계 강화 (안 제6조)

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7조)

사. 독서문화 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제12조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 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1) 입법예고 : 2012. 4. 13. ~ 2012. 4. 17.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

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5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 ① 군수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거창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